

정책연구 2006-5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2006. 12

제주발전연구원

발 간 사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과 전략사업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끊임없이 변화를 주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투자 유치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자 유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국내·외의 경제특별지역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투자유치 환경을 얼마만큼 갖췄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특구를 선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제자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해 현재 153억 달러를 유치하고 공모와 투자 상담을 통해 215억 달러가 유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10개년 1단계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특구인 상하이 푸둥 지구 역시 금융과 무역 등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난 10년간 천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0%까지 치솟은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해외 경쟁 도시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제주도가 경쟁에서 앞서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확보, 투자가들의 수익률 보

장정책 추진, 국제항공노선 확충,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등을 단·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당국의 전문성 확보와 도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관계기관의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 12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고 부 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구성	3
II.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사례조사	4
1. 국내 지자체별 투자유치 현황	4
2. 국내 관련법률 비교분석	20
3. 국외 경쟁지역 투자유치 현황	25
III.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현황	37
1. 투자 환경	37
2. 조직 구성	38
3. 관광단지·지구 투자 현황	41
4.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42
5.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요	42
6. 선도 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	43
IV. 실증분석	45
1. 조사 개요	45
2. 분석결과	47
3. 시사점	57

V. 투자유치 과제 및 활성화방안	58
1. 주요 과제	58
2. 활성화 방안	61
VI. 결론	73
참고문헌	75
부 록	77

표 목 차

<표 2-1>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2005년)	7
<표 2-2> 부산광역시 연도별·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7
<표 2-3> 법률간의 비교분석표	23
<표 2-4> 국외 경쟁지역의 개발환경 및 추진 배경	30
<표 2-5> 국외 법·제도 여건 및 발전전략 비교	34
<표 3-1>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38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정·현원 현황	39
<표 3-3>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2006년)	40
<표 3-4> 관광단지·지구 현황	41
<표 3-5>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유치 현황	42
<표 3-6> 선도 프로젝트 추진 현황	44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	46
<표 4-2> 향후 투자유치 방향	47
<표 4-3>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1순위)	48
<표 4-4>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2순위)	48
<표 4-5>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순위(1순위)	49
<표 4-6>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순위(2순위)	50
<표 4-7> 최근 5년간 내국인 투자확대	50
<표 4-8>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확대	51
<표 4-9> 특별자치도 출범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에 기여여부	51
<표 4-10> 민간부분 투자유치의 주체	52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간의 협력정 도(투자유치관련)	53

<표 4-12> 중요도-실행도 평균값 및 차이	54
<표 4-13> 중요도-실행도 분석	55
<표 4-14>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지속여부	56
<표 4-15>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지속적으로 잘될 지 여부	56
<표 5-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전·후 국비지원 비교	58
<표 5-2> 주변 경쟁도시와의 세율비교	61
<표 5-3> 각국의 고급인력 유치 사례	71

그림 목 차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조직도	39
[그림 4-1] 항목전체를 이용한 Portfolio 분석	55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제주도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치 실적 대비 직접 투자로 연계된 실적은 미비한 상태임.
- 이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세제, 규제, 교육여건 등 각종 투자 입지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03.2)이후 국비지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소홀한 원인도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민자유치 실적은 2006년 10월 현재 54개 사업에 10조 6,521억원, 외국인 투자가 4개사업에 3,540억으로 2001년까지 민간투자유치 목표 12조 2,020억원의 87.8%수준임.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으로부터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과 전략사업 등을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좌우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경제특구를 선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6년 11월 현재 153억 달러를 유치하고 공모와 투자 상담을 통해 215억 달러가 유치될 예정임. 국제비즈니스와 항공물류, 스포츠레저 등의 주제로 나눠 개발을 특화하고 있음.
- 지난 2002년 10개년 1단계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특구인 상하이 푸둥 지구 역시 금융과 무역 등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지난 10년간 천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0%까지 치솟은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한편 한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는 신규자산의 창출

(Greenfield Investment)보다는 부실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적절한 투자기회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 분야 프로젝트는 자본회임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에 수익성 기대가 어려운 분야임.
- 따라서 제주에 투자유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함.
- 실질적인 자본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제주도에 국제적 투자가와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입하고 동북아 대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법·제도가 필요함.
- 법적, 제도적, 그리고 인적·물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함.
- 본 연구는 국내·외, 도내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상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 방법

- 국내·외 국가와 지자체의 투자유치 현황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Empirical study)
 - 제주관광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3. 연구 구성

- 제1장은 서론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구성에 대해 다룸.
- 제2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사례조사로 강원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등 국내 지자체별 투자유치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업도시개발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등의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비교·분석 등을 다룸.
- 제3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현황분석부문으로 투자환경, 투자유치 조직구성, 관광단지·지구 투자현황,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요, 선도 프로젝트 현황 등에 대해 다룸.
- 제4장은 실증분석부문으로 공무원, 학계, 관광업계, 관광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룸.
- 제5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과제 및 활성화부문으로 국내·외 지역과 비교, 현 투자유치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상의 과제와 이를 토대로 한 활성화방안을 다룸.
- 제6장은 결론부문으로 연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제시함.

Ⅱ.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사례조사

1. 국내 지자체별 투자유치 현황

가. 강원도

- 강원도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확장 및 건설, 철도의 복선화 및 신규 건설, 양양국제공항 및 속초·동해·삼척항 활성화를 시키고 있음.
-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보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잠재적 외국투자가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관광산업관련 주요 프로젝트는 속초 테마파크 개발임. 속초지역 일원에 외자유치를 통하여 산과 바다를 활용한 국제수준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진흥과 동해안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2~3억불을 투자하여 37천평내외의 규모로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음.
- 개발방향으로는 첫째, 산과 바다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되 1단계로는 1.2억불을 투자하여 동양 최대규모의 워터파크와 스파, 가족호텔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마리나, 특급호텔, 국제빌리지, 아쿠아리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외 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투자 전문잡지인 인베스트 코리아저널과 골프다이제스트, 영자신문(코리아타임즈, 코리아헤럴드), 홍보물 5종 제작(책자, 브로셔, CD 등, 해외투자가 및 교민들에게 수시로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나. 부산광역시

1) 외자유치 조직 개편

- 외자유치조직의 개편내용으로 기존 정책개발실 해외자본유치기획단 등에서 추진하던 외자유치업무를 '98. 9월 조직개편 시 외자유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함.
- '99년도에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제정,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 개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운영 등으로 보다 본격적이고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음.
- 2003년 2월에는 외자유치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자유치보좌관실, 경제진흥국의 투자통상과, 도시개발담당관실 소속의 외자유치담당자들로 구성된 외자유치실을 신설하였음. 외자유치실은 외자유치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마케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역할도 겸하고 있음.

2) 산업용지의 확충

-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충으로는 2004년 하반기 30여년 동안 개발이 묶여 있던 동부산지역의 100여만평이 GB가 해제되어 천혜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서부산권의 산업단지 개발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항만물류 분야의 확충 등으로 부산은 산업단지 확충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음.
- 이를 계기로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할 예정이며, 세계적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센텀시티

내에도 만평 규모의 임대부지를 제안해 두고 있음.

3) 외국인 생활환경과 경영환경 개선

- 외국인 생활환경과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학교에 한하던 지원사항을 외국인 병원에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현금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음.
- 또한 외국인기업의 컨설팅비용,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독일의 외국인투자기업인 스타빌루스사 등이 혜택을 봄.

- '98. 9 외자유치 전담조직 「투자진흥과」 신설
- '98.10 「외국인투자유치 종합전략」 수립
- '98.11 「외자유치 민간 전문팀」 구성 ▷ 상품개발, 마케팅, 국제금융분야
- '98.12 국내·외 유치협조조직(지역, 중앙, 해외) 협조체계 구축
- '99. 5 외국인투자촉진조례 제정,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설(투자진흥과내)
- '99. 7 외국인투자지원 서울사무소 개소(KOTRA)
- '99. 7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37명) 위촉 및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
- '03. 2 외자유치실 개편 (외자유치팀 + 민간출신 전문계약직)
- '04.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항만공사 출범
- '04. 5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신청 (부산과학산업단지내 9만 2천평)
- '04. 12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Invest Korea』 로 재출범
- '05. 11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지정

4)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정례 간담회 개최

- 부산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함.
- 기업별 PM을 지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기업경영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표 2-1〉 부산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2005년)

(단위: 천불)

구분	계	네덜란드	싱가폴	일본	미국	독일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기타
건수	102	5	6	30	9	5	8	1	13	25
금액	300,506	139,189	90,933	15,809	14,933	7,054	1,199	1,042	703	29,644

자료 : 부산광역시, 시정백서, 2006.

〈표 2-2〉 부산광역시 연도별·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천불)

연도별	계		제조업		서비스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76	3,488,141	253	955,973	522	2,550,168
80년대 이전	65	491,041	48	37,185	17	453,856
1990-1999	202	1,210,798	78	404,304	124	806,494
2000년	83	552,952	27	292,872	56	260,080
2001년	99	469,825	31	23,079	68	464,746
2002년	70	252,443	19	60,187	51	192,256
2003년	73	77,685	11	35,107	62	42,578
2004년	82	132,891	14	19,014	68	113,877
2005년	102	300,506	25	84,225	76	216,281

자료 : 부산광역시, 시정백서, 2006.

다. 전라남도

1)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앉아서 기다리는 체제」에서 「찾아가 모셔오는 체제」로 전환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민선 3기 출범이후 경제통상국을 도직제순위 2위인 경제통상실로 격상시키고 투자진흥과를 두어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국내·외 투자유치 창구 역할을 하는 투자유치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민간기업(삼성, 포스코 금호산업, 동원증권)에서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유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제마인드를 제고함과 동시에 시·군에서도 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와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시·군에서 과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였고, 14개 시·군에서는 담당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여기에 덧붙여 도내 실무진들의 투자유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04. 1. 29 ~ 1. 30(1박2일)까지 도·시·군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광양 백운산 수련원에서 개최하였고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투자유치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운영하였음.

2) 투자유치 업무편람 제작 활용

-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투자상담을 위해 투자유치의 여건과 절차 및 지원제도를 체계화한 투자유치 업무편람을 최초로 제작하였음.

- 편람은 기존의 나열식 제작방식을 탈피하여 투자유치 상담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유치의 여건, 절차,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였음.

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 민선 3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투자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집중적·지속적으로 교섭 활동을 펼쳤음.
- 기업별 전담자는 기업방문, 전화, 편지,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현장방문 안내, 창업지도, 주민 집단민원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는 등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였음.
- 그 결과 (주)일상의 복합레저단지 1조 5,031억(여수)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한편 보상과 경쟁을 통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7조에 따라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음.

4) 다양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

- 도의 투자유치 인지도 제고와 투자환경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 D/B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Mailing System 홍보물 전송, 라디오·TV·신문 등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음.
- Arirang TV를 통해 2005. 4월~2005. 7월까지 전라남도의 투자환경과 인센티브 등을 집중 홍보하였음.

5) 민간부문 관련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투자유치 총력 지원

-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자문·협력 그룹을 확보하여 투자유치에 관련된 각종 전략수립 및 중요사항 결정을 수행하게 했음. 분야별 『투자유치 자문관』을 2003년말 72명에서 2004년에는 80명으로 확대 위촉하였고 교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되는 전남정책발전자문회의 산하에 『투자유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국내·외 자본유치 주선 및 금융지원을 위해 2004. 11 『우리은행』과 금융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정보 수집과 금융자문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갈 계획중에 있음.

라. 경기도

- 경기도는 민선 2기 출범시인 1998년부터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당시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M&A형 투자유치나 국가적인 재정부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개발형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음.
- 민선 3기 부터는 외국의 첨단기술 이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첨단제조업위주의 공장설립형 투자유치로 전환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1)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 활동과 대규모 투자유치단 활동과의 조화

- 대규모 투자유치단에 앞서 실무책임자 중심의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단 활동에 주력하여 2005년도에는 총 25회 101명의 투자유치단을 파견하였음.

-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8회 135명을 파견하여 LCD업종, 자동차 부품 등 첨단제조업, R&D시설 등으로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시켰음.

2) 다각적인 투자환경 홍보

- 국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프로젝트별 투자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음.
- 국내 거주 외국인,상공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비디오, CD, 파워포인트, 인터넷, 홍보 브로슈어 제작, 국내·외 유명 신문·잡지 광고 등 홍보물 및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심을 모았음.
- 특히,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 뒷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나, 세계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이야기」는 LG, Philips LCD, 3M, Siemens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경기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세계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력을 현장감있게 반영함.

3)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지구 조성

- 경기도에서는 해외첨단기업 유치로 당면한 실업문제 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1999년부터 7개소의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말 현재 조성 면적은 50만 4,000평으로 이곳에는 일본의 첨단기업인 니토옵티컬사 등 77개사가 입주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자가 경기도내 임대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업체를 엄격히 선발하여 입주시킴.

4) 기업전용 홈페이지 구축

-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구축하여 2004년 2월 5일 개통하였으며, 월간지표, 경기도 종합주가지수 등 월간경제동향과 창업애로상담, 수출애로상담, 투자상담, 창업지원, 자금지원, 수출입지원 및 공장설립을 위한 개별입지, 공장설립지원안내, 공장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벤처뉴스, 기업 엔젤클럽, 경기벤처협회, 벤처빌딩 운영 등에 관한 벤처기업 내용을 확충하였음.
-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인에게 사이버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

마. 경상북도

1) 해외 도민을 대상으로 한 투자 홍보

- 해외 도민회에 대한 도정홍보 확대, 고향소식 전파, 고향방문 및 초청사업 등을 실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도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 홍보에는 고향소식지 송부, 도정지 등 홍보 자료를 수시로 송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도민들이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갖게하여 도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각종 도민회행사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도민회 별로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수시 총회시 도지사의 격려문을 송부하고 있고, 특히 2003년 동경도민회와 찌바도민회 총회에 도지사가 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협의와 함께 고향지역의 투자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2) 도내 투자유치기반 조성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는 '03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단(2개팀)을 설치하였고 '04년에는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과(3개 담당, 12명)로 확대·개편하였음.
-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03년에는 『외국인투자촉진지원조례』를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로 개정하여 도세 감면·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투자 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29명을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투자유치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게 했음.
- 또한, 산업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군 등과의 네트워킹 및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서울JAPAN Club, 외국기업협회 등 기관·단체와도 공동 협력 사업을 전개했음.

3)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찾아가는 투자유치활동 전개

-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의 최적지, 경북』 이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10종의 홍보 책자 및 동영상을 영어와 일어로

발행하여 홍보에 활용했음.

- 언론, 도청 홈페이지, 투자 관련 해외 전문잡지, 야립 광고탑, 열차·항공기 내 비치 잡지, 투자유치설명회, 해외 기업 방문 등을 통하여 도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했음.
- 또한 '04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럽과 미국의 투자유망기업을 발굴, 타깃기업(34개)으로 선정했고, 잠재 투자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음('03년 6월, 미국 시카고·워싱턴·LA, '03년 10월, 미국 워싱턴·산호세, '03년 11, 싱가포르·홍콩 등).
- 이외에 '03년중 3회에 걸쳐 180여명의 해외 투자가를 초청하여 도내 투자여건을 홍보하였음. '04년에도 서울·경주·일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IR 활동을 적극 전개했음.

4) 투자유치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

- 투자와 관련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하여 인·허가 및 사업 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지원하였음.
- 또한 MOU 단계부터 도, 시·군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였음.

바. 경상남도

- 경상남도에서는 도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으로 선진경제에 도달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투자유치를 도정의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의 투자유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전국 최초 System 구축후 투자유치 조직 및 인력의 POOL제 시행

- 경상남도에서는 IMF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도전체 3국 8과 465 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도 '98년 8월에 투자유치과(4개팀, 18명)을 신설함.
- 2005.3.9 조직의 최하 단위로 고착되어 있던 계(係) 형태의 조직구조가 투자유치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의 Team제를 도입하였음.
- 지금까지 투자유치 대상 지역별 4개 팀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프로젝트별 또는 산업별 6개 팀으로 개편하였음. 팀장의 직급도 기존의 5급으로 국한하지 않고, 6급이나 7급 공무원 중에서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나면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팀제의 운영은 프로젝트별 또는 산업별로 타켓기업의 발굴에서 투자상담,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밀착하여 One-Stop Service를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신뢰성도 높여줄 수 있게 되었음.
- '99년 1월 '경상남도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입지·고용·교육 훈련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과 지방세 15년간(국내 최장)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였음.

2) Net-work 구축, 민간경험의 활용

- 삼성테크윈(주) 등 민간기업에서 투자유치 전문가를 영입하여 계선라인 등에 배치하여 그들의 노하우를 활용하였음.

- 또한 NOKIA tmc 등 기업대표 14명을 투자유치위원으로 참여시켜 투자유치 주요 정책 심의시 의견을 반영하고 미국·일본 등의 현지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투자정보를 얻고 있음.
- 민간 전문기관인 노무라경제연구소 및 토마츠 회계법인, EUCCK 등을 활용하여 목표 기업 발굴과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음.

3) 공장부지 임대제공 강화

-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임대제공을 위하여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5만평을 지정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 92천평 확장하는 등 외국인기업 임대용 부지 25만평을 확보하여 무료·저가로 임대하였음.
- 전국 최초로 국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9년부터 12개 지구 805,679평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였음.
 -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었고, 미분양 투자촉진지구 구역이 불명확하여 2005. 6. 16에 12개 지구 805,679평을 대대적으로 정비함. 이 중에서 9개 지구 552,354평을 지정 해제하고, 3개 지구 253,325평을 197,187평으로 축소하였음.
 - 반면 진사지방산업단지 2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97,660평을 신규로 지정하였음. 2005년말 현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는 4개 지구로 면적은 494,847평임.
- 또한, 2004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법령상으로 공장부지의 임대가 어려운 국내기업에게 공장부지 매입비의 50%를 무이자로 융자하여 창업초기 비용을

경감해 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년 남짓 운용해 왔음.

- 기존의 공장부지 50%임대지원 제도를 기업의 요구에 의해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농촌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또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시·군과 매칭펀드로 5년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 2005년 본격적인 시행으로 당초 기업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50%임대지원과는 달리 많은 투자기업들의 문의가 있었고, 이중 실제로 투자가 성사된 기업은 4개사로 이들 기업에 대해 경상남도는 향후 19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임.
- 2005년말 기준으로 5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0년까지 총 3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4) 외국인투자유치 PM(Project Manager) 지정·운영

- PM은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운영자로서 2004년 4월 도입하여 외국인 잠재투자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신규 또는 증액투자를 돕고 있음.
- PM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별로 Invest Korea에 신청하면, PM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OTRA 사장이 임명하며, PM의 자격요건은 Invest Korea 직원, 공무원 또는 투자유치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로서 KOTRA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함.
- 2005년 중에 투자유치과장에 이어 (주)토마스아시아 유치 등 9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하여 추가로 기계팀장, 첨단팀장을 PM으로 지정

하여 (주)토마스아시아, KUT(주), 에프엠텍(주) 투자성사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PM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투자유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PM자격 취득자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5) 비즈니스 마인드와 원스탑 서비스(One-Stop Service)

- 산업인프라는 단시일내에 개선되기가 어렵고, 조세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로 차별화가 곤란함.
- 따라서 투자유치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담당공무원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원스탑 서비스의 능력임. 투자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공급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기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을 사랑하는 자세가 중요함.

6) 투자유치 포상제도의 개선

- 실적주의 행정문화의 정착과 투자유치 동기부여를 위해 2000년도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함.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인과 공무원 총 72명에 대해 72,85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에도 공무원 15명에 대해 16,141천원을 지급하였음.
- 2005년에는 포상금 신청과 산정방식을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였음. 1개의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 여러 명의 유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로 평가·지급하던 것을 투자유치 기여도에 따라 투자실적 1건에 대한 포상총액을 배분하고, 투자유치금액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방식을 업종 및 고용인원을 함께 반영하여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

7) 전방위의 공격적 유치활동

- 투자최적지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TV, 라디오, 주요 경제지 및 영자지 등을 통해 매년 3회 이상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음.
- 대규모 투자설명회와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적절히 개최하였고, 소규모 실리적인 해외 IR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 표적 기업의 Contact point 확보 및 방문상담 등 지속적 관리와 수도권 기업,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전개함.

8) 감동적인 사후관리

- ‘기 투자기업인의 말 한 마디가 신규 투자를 움직인다’는 말은 공무원 열 마디 말보다 투자기업인의 말 한 마디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임.
- 경남도내 기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자 초청 간담회, 정례적인 방문, AP (Assistant Partner) 지정 운영을 통하여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화합 및 무분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문노무사를 위촉하여 무료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사.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도입목적은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을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권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를 실현하는데 있음.
- 주요 유치대상 서비스분야로는 물류, 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 레저,

연구개발,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임.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됨.
- 또한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무신고로 직접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기간 확대 등 근로조건 완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외국 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예외조치를 허용받음.

2. 국내 관련법률 비교 분석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기업도시개발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별법」등의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비교·분석함.

가. 도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됨.
-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관광, 청정 1차산업,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이유로 도입함.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주도로 도시를 개발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정부는 규제완화와 지원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이 원하는 위치에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꾀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나. 비교 분석

- 4개의 법률은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법률적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개발의 주체·대상지역·외국투자자의 접근편의성·외국에 대한 개방정도 등에서 차별화됨.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외국인의 자유왕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무비자에 의한 입국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지원·외국어서비스제공·외국인에게 주택공급·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소요자금 지원, 외국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허용,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자금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가 비슷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3개의 지역과는 달리 환경보전에 대하여 강화된 규제를 하고 있음. 각종 보전지역, 보존자원의 지정, 지하수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

〈표 2-3〉 법률간의 비교분석표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별법
도입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킴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강화	기업주도로 도시개발	지역의 특화발전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
제정일	2006.2.21	2002.12.30	2004.12.31	2004.9.22
대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초광역지구 (현재3개지구가 지정)	시·군의 단위 (현재 6개시범사업지)	시·군·구의 단위 (30개지역 지정)
사업의 주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중앙정부, 광역단체장	민간기업,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특화사업자
외국인 생활 개선특례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마련	외국인 서비스와 One-Stop Service를 제공 (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생활개선에 관한 특례 없음	지역특화내용에 따라 틀려질 수 있음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입주기업 범위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관광업, 문화산업, 교육, 의료, IT, BT 등 5백만불이상 투자한 기업 -제주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업분야 1천만불이상 투자 또는 물류업분야 5백만불이상 투자한 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 : 면제 -재산세 : 10년간 100%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입주기업 범위 -제조업과 관광업, 국제회의시설에 1천만불이상 투자 -물류업과 의료분야에서 5백만불이상 투자한 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세·법인세 : 5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 : 면제 -재산세 등 : 7년 100%, 3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입주기업 -제조업, 엔지니어링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업,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과학, 기술서비스업, 관광업 등에 1천만불이상 투자한 기업 -연구·개발업 등 50억원(5백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 감면혜택 -소득세·법인세 -개발구역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별법 제11조 -규제특례는 특구 및 특화사업자에 대하여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기준 -1천만불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면서 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이상인 경우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 : 면제 -재산세 : 15년간 100%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기준 -3천만불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면서 경제자유구역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1억불이상인 경우 감면기간 및 감면율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3년 100%, 2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기준 -1천억원(3천만불)이상투자(자기자본 20%이상 확보)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 3년간 50%, 2년간 25%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 3년 100%, 2년 50% 	상 동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2006.

구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 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 구에대한규제특별법
부담금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 체조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등 7종 부담 금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3종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보 전부담금, 대체조지조 성비,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규정 없음
교육개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준용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교에 대하여 전면 외국교 육기관 인정	외국교육기관 허용 (초·중등교육법제2 조규정대상제외)	교육특구에서는 인정 (군산교육특 구)
의료기관의 설립	외국인의료기관 및 약국설립 가능(당연지정제배제) 내국인대상 약업 금지	좌 동	외국인의료기관 규정 없음	의료특구인 경우 인정가능성
규제개혁 방식	일괄 규제개혁 및 특별자치 도조례위임	일률적 규제완화	기업도시 조성 사업분야 규제완화	특구 지정 내용 에 따른 규제완화
환경문제 강화규정	청정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정책 강화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특구성질에 따라 바뀜
토지수용권	제한적 토지수용권인정	개발사업자의 토지수용권 인정(제13조)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하게 규정	없음
담당기관	건교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심의기관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총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	기업도시위원회 (국무총리)	지역특화발전 위 원회 (재정경제부장관)
벌칙조항	미수범·예비·음모처벌까지 있음	있음	있음	없음
다른법률과 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동법 우선적용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 획에 우선	완화되는 규정이 있 는 법률이 우선적용	좌 동

3. 국외 경쟁지역 투자유치 현황

가. 경쟁지역의 개발환경 및 배경

- 국내·외 경쟁지역은 각 지역별로 문화 및 인적·자연 자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효율적·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지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와 연계된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함.
- 개발환경에 따른 국내·외 경쟁지역의 개발정책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함.
- 국내·외의 경쟁지역이 개발환경과 개발정책의 변화되는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미국 등과 같은 최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이른바 '싱가포르 21'을 추진하면서, 기업, 금융, 관광, 교통, 첨단산업, 비즈니스 등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음.
- 인센티브는 세제감면위주의 조세인센티브가 주류이며 특히 발달된 금융 지원체제를 구비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03년에 싱가포르 비전 2018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중임. 비전 2018은 세계화와 급속한 기술진보에 따라 인재와

투자확보를 위한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장기발전 목표를 ‘A Globalised, Entrepreneurial and Diversified Economy’로 설정해 놓고 있음.
- 싱가포르를 재창조(remaking)하고 upgrade하여 재능·기업·혁신의 중심 도시, 또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고 국제화된 도시로서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임.
- 향후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계시키고 싱가포르를 전세계의 고도 기술자, 경영인, 기업가, 창의적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우수인력의 아시아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 세계 일류도시(leading global city)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Economic Review Committee는 개방화의 확대, 경쟁력 및 유연성 제고, 기업가정신의 제고, 성장의 양축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우수 인력의 양성, 구조조정 등 6개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를 제시함.
- 이러한 전략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강화와 제조업의 지식 및 연구 집약화에 주력함으로써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R&D 네트워크로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임.

2)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부진한 경제개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방화로 전환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IDA Ireland를 설립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실업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임금이 상승하고 동구유럽이 새로운 입지로 부상하면서 기존 투자유치의 경쟁력을 잃게 되었음.
- 그러자 모든 업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포기하고 R&D센터 유치, 서비스산업 유치, 첨단제조업 유치 등 업종과 가치사슬을 고려한 새로운 투자유치방향을 설정하였음.
- 추진수단으로 과학기술지원재단인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와 함께 해외 우수 R&D센터와 국내 기술인력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위한 최상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3) 두바이

- 두바이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제2의 도시이면서 경제 수도인데, 국내에는 세계 3대 유종의 하나인 두바이유 때문에 친숙함.
- 두바이는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의 노력을 경주해 왔음. 지금은 무역항 중심의 중동지역 허브를 넘어서 산업 및 관광의 세계적 거점을 지향하고 있음.
- 두바이의 성공은 개방외교와 정치리더십, 중계 무역 및 지식산업 거점, 대형 개발사업, 관광 및 이벤트, 공항 및 항만의 5가지 축을 통해 이루어 졌음.
 - 두바이의 랜드마크가 된 버즈 알 아랍 7성급 호텔과 세계 8대 불가사의로 일컬어지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팜 아일랜드) 등은 민간 창의력의 산물임.
 -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 도입과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을 추진함.
 -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대량 주택공급을 촉진함.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관광·무역·금융 허브 조성 역점을 둔 두바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GDP 대비 석유 의존도를 6% 이하로 낮춤.
- 최고급 호텔, 최고층 빌딩, 사막의 실내스키장, 인공섬 조성에 있어 최초·최고·최대가 두바이의 개발전략임.
- 2002년부터 720만m² 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 테크놀로지 파크 건설 및 지역경제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함.
- 인터넷·무역·미디어·헬스·교육·스포츠시티 등 10여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하여 해외기업 유치에 위한 규제완화를 시행함.
- 두바이 개발지역내 친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토지임차 및 소유권 보장을 법제화함.
- 소득세, 법인세 면제 등의 폭넓은 세제혜택 및 용적률, 층높이 제한 등 건설 규제완화, 금융자유구역을 설치함.
- 약 80개의 외국인 학교 설립, 헬스케어시티 건설 등 해외투자 및 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역내 SOC 기반조성을 추진함.
- 140개 이상의 다국적 인구에 이루어진 국제도시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관광종사원을 배치하여 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함.
- 항공·항만 개방 등으로 전 세계 교통을 집중시켜, 중동의 관문도시이자 코즈모폴리탄 도시로 부상함.
- 입국 절차 간소화로 두바이 공항 입국시 평균 6분이 소요되고, 비자면제국은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 달함.
- 2,000명의 전문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연구와 세계적인 홍보마케팅 실시로 주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함.

- 최초·최대·최고라는 타이틀 확보 및 해외 유명 스타를 동원한 각종 이벤트와 A1 그랑프리 두바이 등 국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한 광고효과를 증대함.
- 두바이 사례는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줌. 허브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수의 산업·물류·관광 거점을 집중 육성해야함.
-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안과 실행,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 수준의 인프라 건설 등도 중점 추진해야할 과제들임.

4) 상하이 푸둥

- 중국의 경제특구는 초기에 생산중심형 경제특구였으나, 점차 복합형 경제특구를 모색하고 있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하이의 푸둥 경제특구임.
- 1990년 4월에 중국 국무원은 푸둥지구에 대해 '경제특구'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푸둥신구로 명명)하고 자금 및 정책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음.
- 1993년 1월 상해 부시장을 주임으로 하는 푸둥신구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 산하에 10여개 부처가 설치되었음.
- 푸둥신구는 상하이 시 동서를 가로지르는 황포강의 동쪽에 위치, 중국에서 제일 비옥한 양자강 삼각주에 자리잡고 있음.
- 푸둥신구는 연해개방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 양자강과 황포강이 바다에 흘러드는 교차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적 533km², 인구 240만명에 달함.
- 푸둥은 현재 경제특구내에 4개 개발구를 기반으로 생산, 교역 및 금융 등 복합형 특구를 지향하고 있음. 루자쭈이 금융무역구, 와이가오차우 보세

구, 진차 수출가공구, 장강 첨단과기원 등으로 나뉜.

- 이외에 푸둥은 국제공항의 푸둥 이전 및 심수항 건설 등 물류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 EXPO개최는 중국 및 상하이 경제에서 푸둥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됨.
- 푸둥 경제특구에서 장려되는 산업분야는 정보통신산업, 자동차부품, 최신 바이오제약기술, 신소재산업 분야, 금융 및 무역기관, 환경보호 관련 산업, 상업 및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분야, 현대식 영농 등 다양함.

〈표 2-4〉 국외 경쟁지역의 개발환경 및 추진 배경

특구 지역	인구·면적 및 언어	지리적·경제적 환경	개발추진배경
싱가포르	- 면적 약 685km ² (제주의 약1/3배) - 인구 약 300만명 - 언어 영어, 말레이어, 만다린어, 타밀어	-지리적 환경 :주섬과 5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레이 반도의 남쪽 끝,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길목 -1인당 GNP : \$21,500 -경제적 여건 : 부족한 천연자원, 한정된 노동력, 소규모 국내시장	-1980년대 중반이후 : 연평균 8%이상 성장세, 정부주도하에 발전전략과 국가비전을 제시 -1986년 ‘싱가포르 경제 : 새로운 방향’ 경제위원회 구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서비스업쪽으로 변환하는 계기 -1990년대 : 금융·서비스 부문의 중심지로서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성장 -1991년 10월 ‘전략적 경제계획(SEP)’ 발표 :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점 육성 -1999년 ‘산업21(Industry 21)’ 발표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식산업화를 목표로 첨단산업을 육성 -2001년 4분기에 경제성장률 -2.0%, 제조업 부문은 -18.6%로 오일쇼크 이후 최대의 경제침체 : 전자산업의 투자집중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는 계기 -2001년 경제재검토위원회(ERC) 구성 -2003년 2월 새로운 국가비전 발표 : ‘새로운 도전과 목표—역동적인 글로벌 도시를 향하여(New Challenges, Fresh Goals—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특구지역	인구·면적 및 언어	지리적·경제적 환경	개발추진배경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약 3,885km² (제주의 약 2배) · 인구 약 120만명 · 언어 영어, 아랍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환경: 중동에 위치 · 1인당 GNP: \$19,950 · 경제적 여건: 중중 세계3위 산유국인 UAE 토호국중 하나지만 부존자원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 온건 외교 추진 · '걸프협력위원회(GCC)'의 결성을 주도 : 미국 등 서방과 군사적·경제적 보호막 형성 :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 유지 · 왜곡되어 있는 아랍 이미지 개선 노력 :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아랍고위층을 상대로 포럼 개최(2005.4.24) -두바이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 1985년 자발알리(Jebel Ali) 자유무역지대 설치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 : 아랍금융중심지 모색 ·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산업의 세계적 허브를 지향 →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조성 · 대형 개발산업의 추진 : 부르지두바이, 인공섬프로젝트 등 -두바이 국제공항과 자발알리항 그리고 라시드항 등 세계수준의 공항과 항구를 보유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약 70,232km² (남한의 약 80%) · 인구: 약 397만명 · 언어: 영어, 아일랜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환경: 유럽의 북서부 · 1인당 GNP : \$22,850 · 경제적 여건 :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외자유치로 산업의 발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 1982년 'Telesis Report'가 아일랜드 발전전략의 근간 : 해외기업과 아일랜드기업간 연계강화와 선도기업 육성 · 199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정책과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분리 → 틈새산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 투자개발청(IDA)는 외국인 투자, 산업개발청은 국내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생산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해외기업을 유치 ·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출한 이후,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진출 ·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수출 78억 달러로 1위를 차지
상하이 (푸둥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약 533 km² - 인구: 약 157만명 - 언어: 중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환경 : 12억인구의 중국의 양자강하구에 위치 · 1인당 GNP: \$3,750 · 경제적 여건: 내수·근로여건 등이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중앙공작회의 기간 중 처음으로 특구창설을 제안 · 1980년초부터 특구를 중심으로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추진 · 1988년 4월 해남성에 경제특구를 설치 · 1990년 상해푸둥지구에 경제특구를 설치 · 선전지구→ 장강지구→ 텐진지구로 경제의 중심축을 이동 · UPI는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상하이 지목 · 2004년 외국인투자액은 약 300억달러이고, 세계 100대 기업 중 59개사가 투자하고 있음 · 세계 최대 규모의 신항구 2005년 12월: 1단계 개장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약 41,528 km² (남한의 반 정도) - 인구 : 약 1,624만명 - 언어: 네덜란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환경: 유럽의 북서부,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은 벨기에와 접경 · 1인당 GNP : \$24,430 · 경제적 여건: 수준높은 인력의 대량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대전이후 식민지 상실 등으로 경제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업화정책 추진 · 1970년대 과도한 사회보장과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경제체질 악화 → 이류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팽배 · 1982년 11월 '바세나협약(Wassenaar Agreement)'의 노사정합의로 체결 · 1980~90년대 : 사회보장축소, 노동자 해고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공기기업영화 · 로테르담항 : 연간 50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 3억톤 이상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세계 최대의 항구 · 세계 10대 공항중 하나인 스키폴 공항 보유

특구지역	인구·면적 및 언어	지리적·경제적 환경	개발추진배경
멕시코 마길라도라	· 면적: 1,965,000km ² · 인 구: 약 1억여명 · 언 어: 에스파냐어	· 지리적 환경 :미국남부와 접경을 이룸 · 1 인당 GNP : \$5,530 · 경제적 여건 : 천연자원풍부, 수출시장(미국)근접	· 1964년 멕시코-미국 협정(멕시코인들의 미국 남부지방 취업)의 종료 : 멕시코 내에서 실업문제 대두 · 1965년 해외기업유치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세 가공지역'을 의미하는 마길라도라(Maquiladora) 조성 · 1982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폐소화가 실제가치로 평가절하가 되고, 아시아권의 임금의 상승으로 마길라도라 발전 · 마길라도라의 범위의 확대: 당초 북부국경지역 20km이내, 1971년 해안지역으로 확대, 1972년 국내 전체로 확장 ·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 1994년 IMF로부터 총 528억 달러의 규제금융 지원 받음 · 1998년 '신마길라도라 제도'를 시행 · FTA협정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극적인 입장 · 멕시코 수출의 80%가 미국을 대상으로 함
홍콩	· 면 적 : 약 1,105km ² (제주의 약 70%) · 인 구 : 약 685만명 · 언 어 : 영어, 베이징어	· 지리적 환경: 중국의 동남쪽끝에 위치 · 1 인당 GNP: \$23,500 · 경제적 여건: 세계 금융·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	· 순수개항화단계 : 1950년대 이전 · 수출주도적 산업화의 단계(1950-70년대): 제조업, 산업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약 기획 · 금융 및 산업 중심으로 전환 단계(1970년대 이후) · 세계 금융중심지로 도약 : 아시아, 유럽의 시차중심지 ·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다시 중개무역이 활발해짐 ·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됨 · 외교·국방을 제외한 홍콩의 자치권 이양: '일국이체제' · 홍콩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금융·무역등의 업무 · 홍콩 디즈니랜드 건설: 홍콩 책랍콕 공항에서 11km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2006.

- 제주특별자치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결합형태인 '홍가포르'를 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발환경면에서 협소한 지역에 주변에 많은 나라가 둘러싸고 있고, 천연자원 매장 등이 없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홍콩의 '일국이체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하나 자치권 확보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하여 우월함.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21'을 포함한 각종 국가 비전으로 사회통합면에서 우월함.

- 두바이의 정책주도자의 리더십, 중국 상하이의 전폭적 국가지원, 네덜란드의 갈등타파책, 마길라도라의 지역적 장점 부각, 아일랜드의 정책 변화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항임.
- 개발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 등을 사회통합의 사례로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나. 법·제도 여건 및 발전전략

- 국내·외 경쟁지역의 법과 제도, 투자 인센티브, 사회통합정책 및 발전 전략을 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비교함.
- 각국의 투자정책은 각국이 처한 내외적 환경은 다르지만 외국인투자정책 목표를 자국의 경제목표와 연계시키며 투자정책수단으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표 2-5〉 국외 법·제도 여건 및 발전전략 비교

특구 지역	주요 법·제도	조세인센티브	발전 전략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윈-노스 프로젝트”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 · 경제개발청(EDB)의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 미국기업의 경우는 경제외적 인센티브도 제공 · 국제 비즈니스 종합센터로의 발전을 위한 우대제도의 시행 →지역본부(OHQ) 지정우대, 국제무역회사(AIT)에 대한 조세감면, 국제원유 취급회사(AOT)에 대한 조세감면 ○노사기본정책 - 강력한 정부개입 · 노사분규에 대한 강력한 조정·중재로 수 십년간 무분규 ○정리하고 - 계약해지 탄력적 · M&A· 사업양도· 양수· 자회사설립시 근로 관계 이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촉진 인센티브 : 수출이 총수입의 20%,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소득세의 90%최대 10년간 면제 · 법인세율 : 22%(선도기업 : 5~10년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장 : 10년간 13% 법인세 적용) · 개인소득세하향으로 실질소득높임 · 인센티브 대상 : 경제개발청(EDB)이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핵심분야 · 개방화의 확대: FTA체결 →국제비즈니스 허브 · 효율적이고 유연한 기업 환경과 투자여건을 조성: →소득세인하 및 투자인센티브 확대 · 기업가정신 고취: 활동역량을 강화 · 성장의 양측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 · 우수 인력의 양성 · 경제구조조정: 실업대책마련강화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알리 자유무역지대의 4無, 2多 · 4無 :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경제활동시 UAE국민을 동업자로 선정해야하는 것), 무노동쟁의 · 2多 : 다양한 물류여건, 다양하고 편리한 지원 시스템 ·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 ①Knowledge Village에 대학을 밀집시키고, 외국계 대학들이 입주 ②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 ③중동국가들 특성상 금기된 ‘성인용 시청물’ 등의 시청을 허용 ○두바이공항의 접근성 강조 법과 제도 · 공항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춘 · 출입국에 따른 서류작성을 생략, 농수산물 검역과 외화 관련 규제없음 · 전자카드로 -게이트를 수 초만에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알리 지대의 4無의 인센티브 · 4無: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스폰서 무노동쟁의 →수의 전부를 본국에 송금가능, 외국인의 100% 기업소유권인정 (비 자유무역지대인 경우는 49%) ·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바이의 기본 전략 : · 리더십전략 : 장기전략과 실천으로 신뢰 회복 · 경제·산업 전략 : 선택과 집중 · 대형개발사업의 추진 :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개발가치를 극대화 · 관광 및 이벤트 전략 세계에 어필하는 아이템 발굴 · 공항 및 항만에 대한 전략:미래 대비 효율적 투자 및 운영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 -부르지 두바이(Burj Dubai) 인공섬 프로젝트 등

특구 지역	주요 법·제도	조세인센티브	발전 전략
아 일 랜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에 대상 투자자와 직접 투자환경에 대한 합의를 분 : 마이크로소프트사 입주사례 · 노사관계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을 철폐 · 전자, 소프트웨어, 건강의료 산업, 금융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등 · 더블린의 '디지털 허브'전략 : 전자,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점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최저수준의 법인세 10% 적용 →EU통합 이후 2003년부터 국내외 기업의 차별없이 12.5%의 법인세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게없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수출이 가능한 생산설비보다는 인적 자원이 우선 요구되는 사업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아일랜드에 특화된 전략 · 전자, 소프트웨어, 건강의료 산업, 금융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등
상 하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구역별 산업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 루자쭈이: 상하이의 첨단금융무역지역 (금융분야에서의 특혜제도 운영) · 진차오: 하이테크산업의 수출가공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특혜) · 와이가오차오 : 국제 자유무역지대 (수출입제도의 특혜) · 장강 : BT, IT 등의 투자(분야별 특혜제도) · 인센티브 대상으로 국·내외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함 ·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중업원고용자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기업들의 특혜 · 합작 제조업체 15%법인세(중국 33%) · 기납부소득세 환급제도 : 획득 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하고 합작기간이 5년 초과 · 법인세율 : 15% → 2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개인소득세 : 5-45% · 보조금: 토지임대료 인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인 전략 : · 적극적으로 개방의 확대 · 국·내외 구별이 없는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함 · 단기적인 전략 : 신규지정을 통한 개발지구의 확대를 엄격히 통제 · '국제성 도시'의 3가지 형태의 추진 · 종합형 국제도시 : 산업, 무역, 금융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 · 경제형 국제도시 :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둠 · 전문형 국제도시 : 항만, 운수, 국경무역, 관광 등을 전문화
네 덜 란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세나 협약 이후 안정적인 노사관계 제도 확립 : 노사정의 합의 균형에 의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사회경제협의회'와 '노동재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무차별 제도 ·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보세보관과 국제유통이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제도화 하여 중개무역 선두주자로 나섬 · 사전 조세결정, 이중과세방지 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기준의 적용 · EU통합 이후 2003년부터 국내외 기업의 차별없이 12.5%의 법인세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국가 비전' 제시 · 로테르담 항구와 스키폴 공항을 'MainPort'로 지정 · 물류산업을 주요 유치 대상으로 함 · 개방형 경제 추구 : ·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물류 관련 산업, 첨단산업을 육성의 핵심으로 하는 전략 추구

특구 지역	주요 법·제도	조세인센티브	발전 전략
멕시코 마길라다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신마길라다라법'을 제정 •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지분 상한선을 100%까지 인정 • 멕시코 투자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사업 : 고정자산이 약 4,3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및 멕시코의 지정 12개 사업(항만시설, 해운회사, 보험중개사 등)을 차별화하는 제도 마련 • 통관의 절차와 고용 해지의 절차가 까다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감면의 혜택 : • 인센티브 배제가 멕시코 정부의 원래입장→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 부동산 취득세, 토지이용세 감면 등 • 법인세율 35%: 재투자시 32% • 관세에 대한 면제 혜택 : 북미자유무역협정(303조)으로 2001년 폐지→현재 보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 맥락의 산업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 1994년 북미 3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부터 (세디요 정부의 후반기와 폭스 정부) • 외국인 투자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맞춤형 투자로 가는 전략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도 가능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정 : '일국이체제'라는 고도의 자치권 • 철저한 시장경제원칙 고수 : 정부규제의 최소화, 낮은 조세율, 사유재산권 보장 • 기초 제도의 운영 : 국내외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 출자비용, 현지인 고용, 국산화 비율, 이윤송금 및 재투자 무제한 • 세부운용제도 및 정책 • 자유무역항으로 무역, 금융, 외환거래 관련 규제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수입규제는 공중위생 및 안전에 유해한 물품, 전략비축물자, 세계 공통규제물품 • 민간중심의 공, 항만 운영체제 확립으로 효율적인 공, 항만 서비스 제공 • 항만의 경우 정부는 인프라 및 금융, 산업여건을 주도적으로 조성, 운영관리는 민간부문으로 전환 • 원스톱 서비스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인센티브 • 홍콩에서 획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부과 •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도 타국에서 비과세한 경우 비과세 • 수입관세는 주류, 담배, 메틸알코올, 석유 등 4개 품목에 물품세 성격으로 부과 • 입주기업의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개별사안 별로 인센티브 제공 • 법인세율 :16% 개인소득세 :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과 중국간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방안'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 : 홍콩 구호정책 • 개인여행의 자유화와 홍콩·마카오 간의 협력 강화와 맞물려 홍콩경제를 회생 • 범주강 삼각주지역 경제협력 실시 • 범주강 삼각주지역과 연계한 soc건설 등 • 홍콩 디즈니랜드 건설 • 세계 금융중심이라는 인프라와 함께 관광전략 • '쇼핑홍콩'에서 '레저홍콩'으로 변신 시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2006.

Ⅲ.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현황

1. 투자 환경

- 기초투자환경은 노동, 금융, 토지를 의미함. 금융환경은 제주의 경우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노동환경 및 토지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기초투자환경의 경우 여전히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기업투자에 있어 정보화·기술환경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제주의 경우 정보화 환경이나 기술개발환경 양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인프라 환경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성 및 생활 인프라 등을 지표로 나타낸 것인데, 제주의 경우 국제공항으로서의 제주공항의 협소한 시설 규모와 취항노선 수, 제주항의 접안시설 능력 부족 등 하드웨어 인프라 환경이 미흡함.
- 지방정부의 정책은 정량지표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많으나 정량지표와 함께 정성지표를 통해 지방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유효함. 제주의 경우 투자유치 정책환경은 매우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다른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줌.

〈표 3-1〉 가중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분석결과

구 분	기초투자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정책 환경		종합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시	0.1597	3	0.1901	1	0.2245	1	0.0697	11	0.6440	1
부산시	0.1580	4	0.0843	4	0.1763	2	0.0922	6	0.5108	4
대구시	0.1476	9	0.0719	6	0.1307	7	0.0663	12	0.4165	7
인천시	0.1548	5	0.0833	5	0.1576	3	0.1114	2	0.5071	5
광주시	0.1385	10	0.0659	7	0.1191	9	0.0915	7	0.4150	8
대전시	0.1633	2	0.1501	2	0.1409	5	0.1057	3	0.5600	2
울산시	0.1509	6	0.0553	9	0.1413	4	0.0643	13	0.4118	9
경기도	0.1712	1	0.1194	3	0.1384	6	0.0961	5	0.5251	3
강원도	0.1285	13	0.0292	14	0.0567	16	0.0734	10	0.2878	16
충청북도	0.1329	12	0.0437	11	0.0741	15	0.0628	14	0.3135	14
충청남도	0.1500	7	0.0514	10	0.0924	12	0.1126	1	0.4064	10
전라북도	0.1100	16	0.0344	13	0.0850	14	0.0587	15	0.2881	15
전라남도	0.1280	14	0.0212	16	0.0908	13	0.0802	9	0.3202	13
경상북도	0.1483	8	0.0358	12	0.1309	11	0.0545	16	0.3425	12
경상남도	0.1359	11	0.0626	8	0.1274	8	0.0909	8	0.4168	6
제주도	0.1276	15	0.0239	15	0.1094	10	0.1051	4	0.366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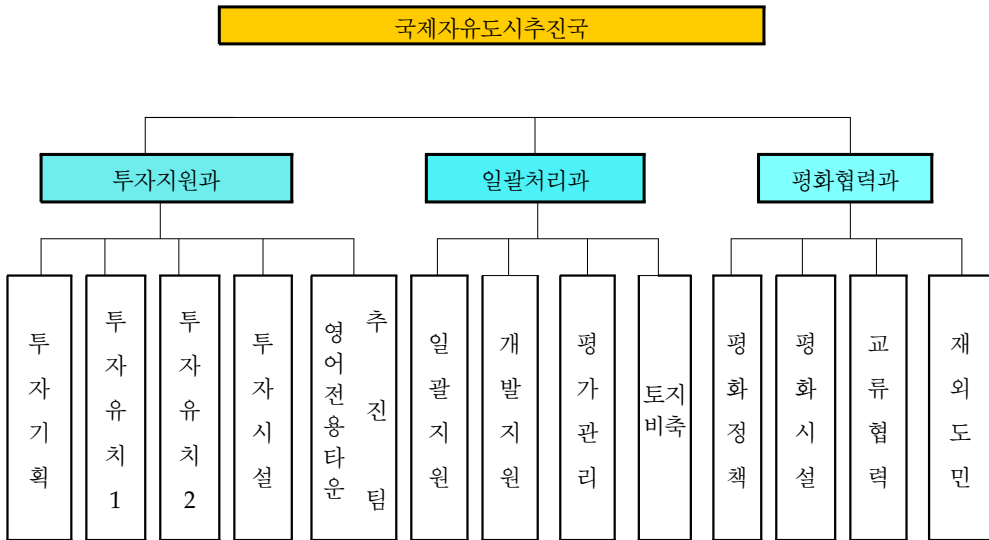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분석, 2005.

2. 조직 구성

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3과(12담당, 1팀),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지원과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영,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업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제주 영어전용 타운 조성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일괄처리과는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투자자 고충처리 총괄, 관

광개발사업 관련 농지·산지·초지 전용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통합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업무,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건축물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선도프로젝트 지원업무 총괄, 토지비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조직도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일 반 직						별정	비 전 입	
		3급	4급	5급	6~8급	기능	계약			
정 원	53	1	3	12	27	4	4	2	3	
현 원	57	-	2	14	31	5	3	2	2	
투자지원과	정 원	21	1	1	4	10	1	3	1	2
	현 원	19	-	2	3	11	1	1	1	1
영어전용타운추진 팀	정 원	-	-	-	-	-	-	-	-	-
	현 원	5			1	3	1			
일괄처리과	정 원	14		1	4	8	1			
	현 원	14		-	5	8	1			
평화협력과	정 원	18		1	4	9	2	1	1	1
	현 원	19		-	5	10	2	2	-	1

나.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 국내·외 기업의 제주지역 투자유치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음.
- 주요 활동으로는 투자유치 활동 기반 구축(투자 관련 기관·기업체 리스트 작성 및 홍보, 콜 센터 유치 지원 기반 조성 등),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투자자 상담, ICC 국제회의 유치 및 제주방문의 해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3-3〉 제주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2006년)

구분	내용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서한 발송('06. 1. 11) : 수도권 기업, 연구소 등 500개소 - 투자진흥지구·기업이전 인센티브제도 등 투자환경 변화 등 · 휴양 주거단지, IT Town,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영국계 투자사 EAHD社 · 대체에너지(풍력발전) 개발 투자유치 추진 - 싱가포르 전력회사인 테마섹을 비롯한 국내·외 자본 · 미국 내 굴지의 호텔·관광업체인 칼슨그룹 투자유치 추진 - 그룹 본사 방문 추진 중 · 잠재 투자자 상담 - 휴양·테마파크·병원 등 복합단지, 풍력발전 등 61개 업체 · 도외 지역 투자유치 홍보 : 4회 - 세계 화상·한상대회, APEC투자환경 전시회, 외국기업인의 날, 건설의 날 등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소재 투자자문사와의 정보교류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 - 유력 투자자문사 초청 설명회 및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 - 외국대학 및 해외 의료기관 유치 등 신설제도 홍보 - IT·BT 등 첨단산업 지원제도 및 세계 감면 제도 등 적극홍보 ·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공동 개최 및 참가 - 도, ICC, JDC,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공동 활동 전개

자료 :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 업무보고, 2006.7.

3. 관광단지·지구 투자 현황

- 운영중인 단지·지구는 11개소로 중문단지, 표선단지, 봉개, 함덕, 남원, 토산, 미천굴, 용머리, 돈내코, 팍지, 돌문화공원 등임.
- 공사중인 지구는 6개소로 오라, 수망, 세화·송당, 묘산봉, 비치힐스리조트, 성산포 섬지지구 등임.
- 미착공지구는 17개소로 이중 사업승인 7개소, 사업예정자 지정 10개소임.
 - 사업승인 : 7개지구(제주하이랜드리조트, 재릉, 제주여성테마파크, 제주롯데리조트, 제주골든파크, 신화역사공원, 제주동물테마파크)
 - 예정자지정 : 10개지구(제주스타시티, 제주시네이처파크, 제동, 남제주오렌지, 중문색달온천, 제주썸머스키텍, 제주비어아일랜드, 제주스카이파크, 제주어드벤처월드, 제주폴로승마리조트)

〈표 3-4〉 관광단지·지구 현황

(단위:억원)

계		사업승인		사업예정자지정		
		단지·지구	투자규모	단지·지구	투자규모	단지·지구
계	34	115,574	24	90,566	10	25,008
운영중	11	29,350	11	29,350	-	-
공사중	6	35,331	6	35,331	-	-
미착공	17	50,893	7	25,885	10	25,008

4. 민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민자유치 실적은 2006년 10월 현재 54개 사업에 10조 6,521억원, 외국인 투자가 4개사업에 3,540억으로 2011년까지 민간투자유치 목표 12조 2,020억원의 87.8% 수준임.
-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은 비오토피아개발(일본), 한국폴로컨트리클럽(싱가폴), 타갈더 (홍콩) 한라글로벌유한회사(러시아), 걸스(이태리) 등 21개 기업이며 총 투자금액은 12,366천불임.
- 국내기업으로는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EMLSI 등이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입지보조금(13억원), 시설투자비(8억원), 근무환경(1억원) 등임. 2005년 민관합작의 제주항공이 설립됨.

〈표 3-5〉 수도권 첨단기업 제주유치 현황

회사명	이전일	매출액('05)	고용인원	신규투자
(주)다음	2004.7.15	4,373억원	160명	109억원
(주)EMLSI	2005.1.4	812억원	66명	-

5.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요

-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써 지정이 되면 국·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대상은 총사업비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며, 관광업 등 19개 업종임.
- 대상업종을 14개 업종에서 19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음. 대상업종은 관광호

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삭도사업 및 퀘도사업, 대체에너지사업, 교육,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임.

- 투자규모는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인하하였음.
- 인센티브 확대 : 개발부담금 면제(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개정 '06.12.15)
- 지정 절차는 계획수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고, 지원위심의(국무총리)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고시함.
- 투자인센티브 지원은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함. 재산세(종부세)는 10년간 면제하며, 취득·등록세, 관세, 개발부담금은 면제함.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은 50% 감면, 국·공유지 50년 임대(75%감면)함.
- 2006년 12월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2건이며, 조세감면 291억원(총투자 3,882억원)임. 제주동물테마파크('05. 7. 13) , 비치힐스리조트('06. 11. 27)가 지정됨.

6. 선도 프로젝트의 전략적 추진

- 사업대상은 관광·휴양분야 5개분야, 비즈니스·첨단산업 2개분야임.
- 투자규모는 총 3조 4,002억원이며, 이중 공공 7,119억원, 민자 2조 6,883억원임.
- 투자실적('06년 하반기)은 1,814억원(국비 111, 센터 1,402, 기타 300, 지방비 1)임.
- 선도프로젝트 추진상황은 착공 1개소, 사업승인 2개소, 기타 4개소임.

〈표 3-6〉 선도 프로젝트 추진 현황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추진상황('06.12월 현재)
첨단과학기술단지	1,096천㎡ (332천평)	4,001	· 착공 : '05.6.11(부지조성공사 : 43%)
휴양형주거단지	744천㎡ (225천평)	4,366	· 개발사업승인 : '05.10.5 (민간사업자 공모중 : '07.4월까지)
생태, 신화 · 역사공원 (신화 · 역사공원)	37,140천㎡ (1단계-1,235천평)	19,954 (19,195)	· 개발사업시행승인 : '06.12.26 (부지매입 : 92%)
서귀포관광미항	98천㎡ (29천평)	1,430	· 항만기본계획 변경 심의완료 (해양수산부) : '06.12.19
쇼피아올렛	165천㎡ (50천평)	731	·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강구
공항자유무역지역	324천㎡ (98천평)	2,200	· 종합계획보완계획에 의해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중문관광단지확충	123천㎡ (46천평)	1,320	· 용도변경(호텔→콘도)계획 수립중

IV. 실증 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개요

- 조사목적 :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투자유치 처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구성¹⁾ : 투자유치 필요성부문, 투자유치 현황부문, 조직간 협력체계 부문, 투자유치 활성화 부문 등으로 구성함.
- 모집단 : 공무원, 학계, 관광업계, 관광협회, 개발센터 등
- 표본크기 : 122명
- 표본추출방법 : 전문가집단 대상 표본할당 추출법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방법 : 1:1 개별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 조사기간 : 2006년 12월 12일 ~ 20일
-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분석함.
-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중심으로 빈도분석과 IPA분석 등을 이용하였음.

1) 제주도의 여건상 관광산업부문의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관광산업부문에 한정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음.

나. 인구통계적 특성

- 성별은 남자 82명(67.2%), 여자 40명(32.8%)임.
- 연령별로는 40대 55명(45.1%), 30대 34명(27.9%), 20대 18명(14.8%), 50대 15명(12.3%)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관광업계 40명(32.8%), 공무원 38명(31.1%),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명(16.4%), 학계 12명(9.8%) 등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이하 92명(75.4%), 대학원졸 27명(22.1%), 고졸이하 2명(1.6%) 등으로 나타남.

〈표 4-1〉 인구통계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변수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성	82	67.2
	여성	40	32.8
	합계	122	100.0
연령	20대	18	14.8
	30대	34	27.9
	40대	55	45.1
	50대	15	12.3
	합계	122	100.0
직업	공무원	38	31.1
	학계	12	9.8
	관광업계	40	32.8
	관광협회	10	8.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16.4
	기타	2	1.6
	합계	122	100.0
학력	고졸이하	2	1.6
	대졸이하	92	75.4
	대학원졸	27	22.1
	기타	1	0.8
	합계	122	100.0

2. 분석 결과

가. 투자유치 필요성

1) 향후 투자유치 방향

- 향후 투자유치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82명(67.2%),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 20명(16.4%), 소규모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대 17명(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 향후 투자유치 방향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	20	16.4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82	67.2
소규모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대	17	13.9
기타	3	2.5
합계	122	100.0

2) 투자유치활성화의 필요성

- 투자유치활성화의 필요성 중 1순위로는 지역경제활성화(고용, 소득증대) 70명(57.4%),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9명(23.8%), 관광부문 투자 재원 확충 8명(6.6%), 선진기업경영법 등의 도입 7명(5.7%)등의 순으로 나타남.
- 투자유치활성화의 필요성 중 2순위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43명(35.2%),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소득증대) 21명(17.2%), 관광부문 투자 재원 확충 19명(15.6%), 지역균형발전 18명(14.8%), 선진기업경영법 등의 도입 14명(11.5%)등의 순으로 나타남.

(1) 1순위

〈표 4-3〉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1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소득증대)	70	57.4
선진기업경영법 등의 도입	7	5.7
투자자 다변화	3	2.5
관광부문 투자 재원 확충	8	6.6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9	23.8
지역균형발전	5	4.1
합계	122	100.0

(2) 2순위

〈표 4-4〉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2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소득증대)	21	17.2
선진기업경영법 등의 도입	14	11.5
투자자 다변화	7	5.7
관광부문 투자 재원 확충	19	15.6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43	35.2
지역균형발전	18	14.8
합계	122	100.0

3)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순위

-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1순위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쇼핑 아울렛 등) 42명(34.4%),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 21명(17.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17명(13.9%), 영상테마파크 11명(9.0%)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2순위로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쇼핑 아울렛 등) 33명(27.0%), 관광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 25명(20.5%), 영상테마파크 22명(18.0%),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12명(9.8%)등의 순으로 나타남.

(1) 1순위

〈표 4-5〉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순위(1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영상테마파크	11	9.0
관광호텔업	8	6.6
휴양콘도미니엄업	3	2.5
카지노업	10	8.2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	17	13.9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	21	17.2
유원시설업	4	3.3
골프장업	1	0.8
관광유람선업	2	1.6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쇼핑아울렛 등)	42	34.4
기타	3	2.5
합계	122	100.0

(2) 2순위

〈표 4-6〉 국내·외 민간자본투자의 우선적 순위(2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영상테마파크	22	18.0
관광호텔업	5	4.1
휴양콘도미니엄업	1	.8
카지노업	6	4.9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	12	9.8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	25	20.5
유원시설업	10	8.2
골프장업	3	2.5
관광유람선업	3	2.5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쇼핑아웃렛 등)	33	27.0
기타	2	1.6
합계	122	100.0

나. 투자유치 현황

1) 최근 5년간 내국인 투자확대

- 최근 5년간 내국인 투자확대는 확대되지 않음 44명(36.1%), 보통 41명(33.6%), 확대됨 25명(20.5%), 전혀 확대되지 않음 8명(6.6%)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7〉 최근 5년간 내국인 투자확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혀 확대되지 않음	8	6.6
확대되지 않음	44	36.1
보통	41	33.6
확대됨	25	20.5
매우 확대됨	4	3.3
합계	122	100.0

2)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확대

-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확대는 확대 되지 않음 46명(37.7%), 보통 41명(33.6%), 확대됨 22명(18.0%), 전혀 확대되지 않음 11명(9.0%)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8〉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확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혀 확대되지 않음	11	9.0
확대 되지 않음	46	37.7
보통	41	33.6
확대됨	22	18.0
매우 확대됨	2	1.6
합계	122	100.0

3) 특별자치도 출범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에 기여여부

- 특별자치도 출범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에 기여여부로는 그렇다 58명(47.5%), 보통 38명(31.1%), 매우 그렇다 16명(13.1%), 그렇지 않다 8명(6.6%)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9〉 특별자치도 출범이 국내·외 민간투자유치에 기여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1.6
그렇지 않다	8	6.6
보통	38	31.1
그렇다	58	47.5
매우 그렇다	16	13.1
합계	122	100.0

다. 조직간 협력체계

1) 민간부분 투자유치의 주체

- 민간부분 투자유치의 주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명(32.0%), 제주도 투자지원과 30명(24.6%), 신설된 제주관광공사 22명(18.0%), 제주도 관광정책과 11명(9.0%)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0〉 민간부분 투자유치의 주체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제주도 투자지원과	30	24.6
제주도 일괄처리과	7	5.7
제주도 관광정책과	11	9.0
제주도 관광마케팅과	7	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	32.0
신설된 제주관광공사	22	18.0
관광협회	3	2.5
기타	3	2.5
합계	122	100.0

2)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간의 협력정도(투자유치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간의 협력정도(투자유치관련)는 보통 78명(63.9%), 협력하지 않았다 25명(20.5%), 잘 협력해왔다 13명(10.7%)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1〉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간의 협력정도(투자유치관련)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혀 협력하지 않았다	6	4.9
협력하지 않았다	25	20.5
보통	78	63.9
잘 협력해왔다	13	10.7
합계	122	100.0

라. 투자유치 활성화

- 관광산업부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에 대해 개별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한 실제적 평가를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의 평균값과 성과의 평균값의 차이를 산출하여 속성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개별항목 중요도 및 실행도

- 전체적으로 볼 때, 실행도보다는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중요도와 실행도간의 차이값이 크게 나타나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은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1.43), 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1.37),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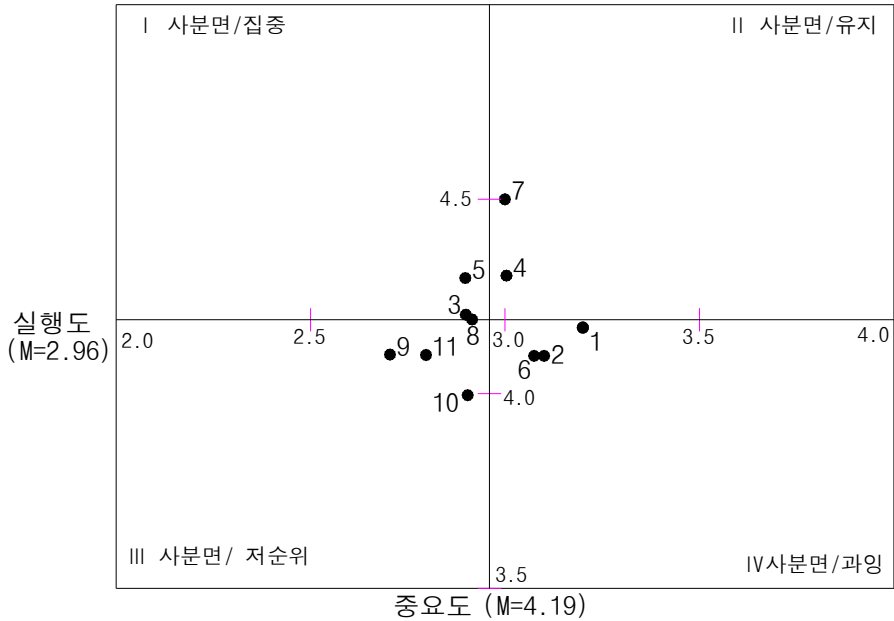
〈표 4-12〉 중요도-실행도 평균값 및 차이

구 분	중요도(평균값)	실행도(평균값)	중요도-실행도
투자유치전담 조직 기능강화	4.17	3.20	0.97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4.14	3.11	1.03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4.21	2.85	1.36
투자인센티브 확대(세계 지원)	4.34	3.00	1.34
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4.28	2.91	1.37
신뢰성있는 투자설명회 개최	4.13	3.05	1.08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4.47	3.04	1.43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유치센터 운영 등)	4.18	2.89	1.29
투자가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	4.10	2.75	1.35
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3.98	2.91	1.07
투자가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4.07	2.83	1.24

2) 항목전체를 이용한 Portfolio 분석

- I사분면에 속하는 속성을 살펴보면, 집중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할 항목으로는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가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II사분면에 속하는 속성들을 살펴보면, 투자인센티브 확대(세계 지원),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 다른 부분보다 높은 수준의 실행결과를 갖고 있음.
- III사분면은 중요도도 낮고 성취도도 낮은 속성이므로 실행도가 낮은 지라도 과도하게 집중해서는 안되는 부분임. 그 속성들을 살펴보면, 신속한 투자 정보 제공(유치센터 운영 등), 투자가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 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투자가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나타남.

- IV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의 속성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의 속성에 대해 현재의 노력을 고려해야 함.



(그림 4-1) 항목전체를 이용한 Portfolio 분석

1.투자유치전담 조직 기능강화	2.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3.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4.투자인센티브 확대(세제 지원)
5.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6. 신뢰성있는 투자설명회 개최
7.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8.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유치센터 운영 등)
9. 투자가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	10. 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11. 투자가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표 4-13> 중요도-실행도 분석

구 간	속 성
I 사분면/집중	3.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5.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II사분면/유지	4.투자인센티브 확대(세제 지원), 7.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III사분면/저순위	8.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유치센터 운영 등), 9. 투자가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 10. 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11. 투자가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IV사분면/과잉	1.투자유치전담 조직 기능강화, 2.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6. 신뢰성있는 투자설명회 개최

마. 향후 투자유치 전망

(1)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지속여부

-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지속여부로는 매우 그렇다 63명(51.6%), 그렇다 52명(42.6%), 보통 5명(4.1%)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4〉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지속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그렇지 않다	2	1.6
보통	5	4.1
그렇다	52	42.6
매우 그렇다	63	51.6
합계	122	100.0

(2)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지속적으로 잘될지 여부

-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지속적으로 잘될지 여부는 그렇다 53명(43.4%), 보통 45명(36.9%), 그렇지 않다 11명(9.0%), 매우 그렇다 11명(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15〉 향후 관광산업부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지속적으로 잘될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1.6
그렇지 않다	11	9.0
보통	45	36.9
그렇다	53	43.4
매우 그렇다	11	9.0
합계	122	100.0

3. 시사점

- 첫째, 향후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구해야 함.
 -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제도적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므로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중 관광부문 5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져야함.
- 둘째, 투자유치 관련 조직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국내·외 투자유치 전반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설 예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공회의소 등이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셋째, 포트폴리오분석결과,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속성이 집중적인 관리 및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조직구조를 기업의 Team제 도입하는 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법, 제도, 협상, 프로젝트 기획과 평가 등의 심층 교육을 통한 투자유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PM 교육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소수정예를 선발하여 해외교육훈련(외국에서 학위과정 수행 등) 등 상당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해야함.
 - 투자인센티브는 지금까지 조세 감면 위주의 지원제도에 초점을 두었으나, 탄력적으로 보조금 지급방안을 고려함. 각종 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제주도민 고용비율, 업종, 입지 지역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함.

V. 투자유치 과제 및 활성화방안

1. 주요 과제

- 첫째,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투자계획 부처협의 시 검토사업으로 분류하거나 재협의 요청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확정된 투자계획의 경우에도 부처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여야 함에도 미반영 사례가 많음. 종합계획 확정('03.2)이후 국비지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5-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전·후 국비지원 비교

구 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전			확정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원액	6,964억원	5,826억원	6,281억원	5,684억원 (계획의 61.8%)

자료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발전 방안, 2004.12..

- 둘째, 투자여건이 불리한데도 인센티브는 불충분함.
 - 투자부문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외국 경쟁도시와 비교할 때 투자여건이 불리함. 또한 타 시·도(인천, 부산, 기업도시)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법·제도상의 투자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음.
 - 예산상의 제약,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지자체의 실정임.

- 셋째, 투자유치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함.
 -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자본의 유치 업무는 그 계획, 조성, 그리고 사업지원 및 민자사업의 관리 등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상공회의소, 설립예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각 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이고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투자홍보효과의 감소, 비용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함.
 - 선진국들은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우수인력들을 유치하고 있음.
 - 국내·외 기업들이 첨단산업을 세우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교통시설의 확충, 숙련된 노동력과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됨. 숙련된 고급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족할만한 자녀교육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함.
- 다섯째,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 현재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와 사업부지 확보난 등으로 인해 민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민자 유치 등을 통한 개발사업은 크게 사업예정자 지정, 통합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이행, 개발사업 승인, 착공 등의 절차로 추진되고 있음.
 - 이중 절차 이행 과정은 2년 이내의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기간 장기화는 물론 외국자본 등의 투자 유치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통합영향평가만 해도 초안 작성·제출과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는 물론 본안 협의, 심의 등에 있어 최소 19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임.
 - 또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도 기초조사와 주민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상 10개월이나 걸리고 있음.
 - 이들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절차 이행 기간만 최소 22개월(1년10개월)이 소요되면서 투자업체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다섯째,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을 사실상 폐지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공익에 반하는 사업, 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업, 미풍양속을 훼손하는 사업만을 제외하고 모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함.
 - 조세감면 등이 이루어지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을 관광과 문화사업 외에 교육, 의료, 첨단기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다양한 업종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섯째, 토지수용문제임.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 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많음. 외국인이 제주도에 투자하고 싶은 의향은 존재하나, 실제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문제로 인해 투자유치 진행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제주도의 토지중 상당수가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 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한적 토지수용권(외지인들이 소유한 토지)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한국토지공사가 운용중인 토지비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지역 종합 개발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합의 토지수용이 어려운 경우 제주도와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현 비축된 토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함.

2. 활성화 방안

가. 제도 개선

1) 법인세율 인하

-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 (1억원 초과 25%, 1억원 이하 13%).
-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가 경쟁력을 갖추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함.
-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인세율 인하보다, 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3년100%, 2년 50% → 5년100%, 2년 50%)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감면범위는 5백만불 이상이면 되므로 투자사업 대부분이 해당됨. 기업입장에서는 감면기간 확대가 오히려 실질 이익이 더 크며, 7년 감면기간 이후 정부정책의 변화(법인세율 인하 등)가 예상됨.

〈표 5-2〉 주변 경쟁도시와의 세율비교

구분	한 국	상해 푸둥	홍콩 ¹⁾	싱가포르	두바이 ²⁾	아일랜드
법인세(%)	25/13	15	17.5	20	0	12.5

1) 최근 홍콩은 현행 법인세율을 12.5%로 인하를 검토 중

2) 원칙적 No Tax 다만, 국내 은행 20%, 정유회사 55%까지 과세

- 장기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과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13% 단일세율로 인하함.

2) 토지비축제도 추진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에 따른 각종 공공용지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가능성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가 제정('06. 4. 5)되었으며, 현재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중임.
- 토지 비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예산확보책 마련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임.

3)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처리절차 간소화 추진

-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도모 및 민자유치를 촉진함.
- 타켓기업의 발굴에서 투자상담,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밀착하여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관광개발사업시행 승인기간을 현 22개월에서 10여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함.
- 예정자 지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통합영향평가 등에 대해 행정시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접수 처리함.
-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과 통합영향평가 초안 공람, 신문공고 등을 동시에 실시하여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함.

4) 투자진흥지구제도의 개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 방법 및 역할에 한계가 있음.
- 현행 투자진흥지구는 관광휴양업 등 업종에 대해서만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업종개념에서 지구(Zone) 또는 단지개념으로 전환하여 사전 토지확보 및 기반시설 마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핵심프로젝트와 전략프로젝트와 같이 지구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출자 관련 출자총액제한 규제완화가 필요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확대를 추진함. 현행 감면대상 6종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하여 9종으로 확대 감면을 추진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가 복잡하여 개선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18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의하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지정 해제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권한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함. 현행 5백만불 이상 3년 100%, 2년 50% 국세, 지방세 감면에서 2천만불 이상의 경우는 5년 100%, 2년 50% 감면함.

5) 탄력적인 보조금 등의 수단 활용

- 조세 감면 위주의 지원 제도 운영으로는 기업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조세 감면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보조금 등의 수단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조세감면보다는 비용보전 등 재정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 기업의 지역민의 고용창출 인원, 진출지역의 낙후성이 보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현금보조금 제도를 제주도민 고용비율, 업종, 입지 지역 등 고용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신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6) 일률적인 조세 감면제도 지양

-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부여함.
- 투자규모, 수출액비율, 고용창출효과, 전후방산업효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또는 조세감면율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지 말고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방안도 고려함.

나. 조직간 협력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1) 유관기관 공동 마케팅 추진 및 전문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공회의소, 설립예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유치협의회 구성과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함.
- 각 기관, 단체별로 산발적이고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투자홍보효과의 감소, 비용집행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는 기존 관행개선이 요구됨.
- 투자유치협의회는 각 기관별 실무자가 한달에 2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투자유치의 방향과 홍보방향 등을 논의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해외개발업체, 주요 기업, 금융시장과 잠재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네트워크가 양호하고, 유사 투자유치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핵심투자자를 적극 발굴하는 방안도 필요함.
- 경상남도의 경우 민간 전문기관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노무라 경제연구소, 토마츠 회계법인 등을 활용하여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음.
- 전문협력업체는 잠재투자자의 명단확보와 투자자별 활동사항 보고, 잠재투자자와의 협상, 상담지원,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고급 투자정보 수집 및 제공, 투자유치에 대한 재무 상담자 역할 등을 수행함.

2) 해외투자유치 사무소 설치

-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은 해외현지에서의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들 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투자유치총괄기구의 해외조직망과 별

도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여, 독자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유치 사무소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 투자가 접촉과 이에 필요한 투자 유치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함.
- 신규 투자유치 사무소 설치시,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존 해외홍보 사무소를 활용하여 관광업무와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다만, 형식적인 인원배치보다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3)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및 투자유치 포상제도 개선

-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동 업무의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함.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해외훈련 등 국제화가 필수적임.
- 모든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자질과 능력의 배양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따라 소수정예를 선발하여 상당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분야의 주도적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함.
-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투자 PM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함.
- 향후 각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²⁾를 지정하여, 인·허가 및

2) PM제도는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최초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투자가를 밀착 지원하는 제도임

사업 개시, 사후관리까지 투자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함.

- 또한 공무원의 투자유치 동기 부여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제도를 확대 추진함.
- 중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별로 투자유치 총금액의 0.6%~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투자유치 활동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포상금은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며, 동일 사업의 투자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음.
- 투자유치금액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방식을 업종 및 고용인원을 함께 반영하여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4) 제주이미지위원회 구성

-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 개선 및 강화전략이 필요함.
- 국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제주는 많은 투자지역중 하나에 불과하며, 여건이 나쁘면 들어오지 않고 언제라도 철수를 선택함.
- 프랑스의 경우 총리 산하에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랑스의 이미지 캠페인을 주도함.
- 제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강화를 담당할 제주이미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다. 투자자 관리

1) 잠재 투자자에 대한 DB구축

-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다국적 기업, 개발가, 개발 펀드, 리조트·테마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운영회사 등 주요 잠재 투자자의 DB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접근전략을 수립하여 능동적으로 관계를 강화함.
- 개발사업의 투자자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회사의 개요, 재정상태 및 연락처와 투자실적, 개발자금 규모, 관심 분야 등의 자료를 목록화 한 투자자 DB를 구축함.
- 투자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투자자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함.
- DB를 통해 확보된 상위 100여개사의 기업주, 잠재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방문 설명하는 등 능동적인 투자발굴 활동을 강화함.

2) 투자자 초청 사업 강화 및 맞춤형 투자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독자적인 대외채널 부재 및 외국기업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유치 홍보활동이 아주 미약한 실정임.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함.
- 핵심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진행사항, 사업방식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초청 설명회와 유력투자자를 제주도 현지로 초청 설명하는 초청 간담회 활동을 강화함.
- 개별 투자자가 원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투자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함.
- 제주 투자환경 관련 자료, 관련사업 재무분석 자료, 업계 시장동향 분석

자료, 투자성공사례 조사자료 등 투자자 편의제공용 자료의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함.

- 경기도에서 제작한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 뒷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나, 세계의 장벽을 허물어가는 이야기」를 벤치마킹하여 제주로 이전한 기업들의 투자유치과정과 지원과정, 정착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투자환경에 대한 자세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의 운영, 투자상담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현장감있게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함.

3)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지금까지 국내·외 투자유치정책은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어,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별 관리카드를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전개함.
- 도지사가 국내·외 투자기업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감사패 수여, 전담 공무원 지정 등 투자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지원을 해 주는 등의 활동을 추진함.

4) 투자유치 매뉴얼 작성

-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 담당자별 업무절차, 업무처리방법 등을 종합 매뉴얼화하여 차질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투자유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종합 매뉴얼화는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

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업무처리방식과 전문화를 적극 도모함.

- 현재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으나, 이를 기초로 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행함.

라.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1)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여건 조성

- 투자처 결정시 생활환경이 경제적 환경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요소임.
-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선진적 교육·의료·주거여건 등이 제공이 필수적임.
-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 핵심사업인 국제적 의료기관, 교육기관 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함.
- 두바이의 경우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물리적,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자녀교육을 위한 79개의 외국인학교가 존재함.
- 노사관계 등 경영환경과 교통·주거여건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 또한 외국의 기업들은 해외투자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투자조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차원에서 외국어능력을 겸비하고 국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제도의 정비도 이러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2)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마련

- 국내·외의 숙련된 노동인력과 첨단산업에 종사할 고급 두뇌들이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싱가포르의 과거 최고의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혁신적인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외국 인재유치 정책들을 계속 채택하고 있음.
- 두바이는 부족한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고급 외국인력 유치에 중점을 둬. 종교, 국적 등을 불문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유치함.
- 우수한 대학이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 위치하고 이들 대학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교수진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하고, 학생들의 경우도 우수한 외국학생들을 유치해야함.
-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 및 국내 의료기관 간 협력 및 경쟁이 조화를 이루어야함.

〈표 5-3〉 각국의 고급인력 유치 사례

국가	내 용
중국	- 중국 북경시는 2002년 3월, 외국인 고급인력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개인 장려금 제도를 신설
싱가포르	- IT·BT허브를 지향하는 「One North Project(북위 1도를 의미)」는 기본개념을 'Work·Live·Play'로 표방하면서 고급인력 유치에 주력 · 총 60만평의 공간 중 연구동과 비즈니스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60%이상을 레저·위락·교육·의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영국	- 2000년에 연간 600만 달러 규모의 두뇌유출방지 기금을 신설 · 자국내 고급인력 및 영국이 유치한 해외 고급인력이 영국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 스타급 인력 50명을 집중 지원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외국기업 유치부진과 반전의 해법, 2003.10.

3) 지자체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민들의 의식변화 필요

- 토지 매입과 새로운 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과 기존 업계의 반발 등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도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외국자본에 대한 지역경제주체의 의식구조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내·외 자본유치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 비전을 자신있게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야함.
- 국내·외 투자유치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 지자체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이 문제해결에 중요함

VI. 결론

- 본 연구는 제주도를 국제적 투자자와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입하고 동북아 대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법·제도가 필요하고, 인적·물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출발하였음.
- 국내·외, 도내 실태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상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음.
-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경제특별지역과 경쟁력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법·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토지비축제도 추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절차 간소화, 투자진흥지구제도의 개선,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 일률적인 조세 감면제도 지양 등을 제시하였음.
- 둘째, 투자유치 관련조직간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의 육성과 인적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유관기관 공동 마케팅 추진 및 전문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해외투자유치 사무소 설치,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배양 및 투자유치 포상제도 개선, 제주이미지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음.
- 셋째, 지속적인 투자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잠재 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투자자 초청 사업 강화 및 맞춤형 투자정보 제공,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투자유치 매뉴얼 작성 등을 제시하였음.
- 넷째, 투자유치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물리적·제도적 여건 조성,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마련,

지자체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과 도민들의 의식변화의 필요성 등을 제시 하였음.

- 국내·외 투자 유치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함.
- 오늘의 홍콩과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있기까지 수십년간 꾸준한 투자가 있었고, 심천·상하이 등 중국의 특구들도 초기에는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함.
- 이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과 국내·외 투자유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열린 사고방식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 혁신 등 우리가 그동안 경시해 왔거나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작지만 큰 원칙에 충실하여야함.
-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서고 지방정부와 업계, 도민이 합심하여 나아간다면 동북아 관광·휴양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변화가 좀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김득갑, “선진복합형 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6.11.

박재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6.11.

박형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6.11.

우기종, “경제자유구역 3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계획,”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6.11.

이성봉,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안,”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 2006.11.

임성훈·김학민,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메커니즘과 각국 사례연구,”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2004.12.

허향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동북아 관광거점화 전략,” 제3회 제주평화포럼 자료집, 2005.

강원도, 도정백서, 2006.

경기도, 도정백서, 2006.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6.

경상북도, 도정백서, 2006.

부산광역시, 시정백서, 2006.

전라남도, 도정백서,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2006, 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5년 8월호.

부산광역시, 시정백서, 2006.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과 처방, 2003.1.

삼성경제연구소, 외국기업 유치부진과 반전의 해법, 2003.10.

삼성경제연구소, 두바이,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 2005.5.

재정홍보기획단, 싱가포르비전 2018, 2003.2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례의 시사점-UAE, 두바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06.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발전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안), 2007.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발전 방안, 2004.1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 업무보고, 2006.7.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분석, 2005.

제주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현재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하여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절대 보장될 것입니다. 응답내용은 관련 법률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 부 언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연구원

(☎ 726 - 7403, 0500)

SQ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세 이상

■ 다음 각 문항 중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답을 골라□□√□□표시를 해 주시고, 일부 문항 중에는 간략하게 기입하는 경우(기타 란)도 있습니다.

I	투자유치 필요성
---	----------

1.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투자유치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규모 관광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
-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 ③ 소규모 테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확대
- ④ 더 이상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다
- ⑤ 기타 ()

2. 투자유치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소득증대)
- ② 선진경영기법 등의 도입
- ③ 투자자 다변화
- ④ 관광부문 투자 재원확충
- ⑤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⑥ 지역균형발전
- ⑦ 기타()

3. 제주관광사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는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영상테마파크
- ② 관광호텔업
- ③ 휴양콘도미니엄업
- ④ 카지노업
- ⑤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
- ⑥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
- ⑦ 유원시설업
- ⑧ 골프장업
- ⑨ 관광유람선업
- ⑩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쇼핑아울렛 등)
- ⑪ 기타()

II.	투자유치 현황
-----	---------

1.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최근 5년간 내국인 투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전혀 확대되지않음 ② 확대되지 않음 ③ 보통 ④ 확대됨 ⑤ 매우 확대됨

2.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의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전혀 확대되지않음 ② 확대되지 않음 ③ 보통 ④ 확대됨 ⑤ 매우 확대됨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국내·외 민간자본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II.	조직간 협력체계
------	----------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유치의 주체는 어느 조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제주도 투자지원과 ② 제주도 일괄처리과 ③ 제주도 관광정책과
 ④ 제주도 관광마케팅과 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⑥ 신설될 제주관광공사
 ⑦ 관광협회 ⑧ 기타_____

2. 민간부문 투자유치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지원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와 개발센터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협력하지 않음 ② 협력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잘 협력 ⑤ 매우 잘 협력

IV.	투자유치 활성화
-----	----------

1. 다음 표에 제시된 제주관광산업부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 분	지원정책 수단의 중요도				
	① 전혀 중요 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투자유치전담 조직 기능강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투자인센티브 확대(세제 지원)					
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신뢰성있는 투자설명회 개최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유치센터 운영 등)					
투자가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					
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투자자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2. 다음 표에 제시된 제주관광산업부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수단의 추진성과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 분	지원정책 수단의 추진 성과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	④ 크다	⑤ 매우 크다
투자유치전담 조직 기능강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무원의 투자유치 역량 배양					
투자인센티브 확대(세제 지원)					
투자인센티브 확대(금융 지원)					
신뢰성있는 투자설명회 개최					
제주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					
신속한 투자정보 제공(유치센터 운영 등)					
투자가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 공급					
투자가를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투자가 주거환경, 사회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V. 향후 투자유치 전망

1. 향후에도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향후에도 관광산업부문에 대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귀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한 곳에만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공무원 ② 학계 ③ 관광업계
④ 관광협회 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⑥ 기타()

2.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② 대졸이하 ③ 대학원졸 ④ 기타

※ 끝으로 제주지역 관광산업부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한 귀하의 평소 고견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진

· 연구책임	정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설문담당	최 영 근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연구원
· 자문위원	고 계 성	제주관광대학 교수
	권 문 호	관광학 박사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인 쇄 일 2006. 12
발 행 일 2006. 12
발 행 인 고 부 언(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삼화인쇄사

ISBN 978-89-6010-005 3 9332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